

□ 수입이행기간 연장

- 대상품목 : 1월 입찰 및 배분 물량배정 품목 전체
- 연장기간
 - * 3월말 기한 품목 : 6.30(화)까지(당초 : 3.31(화))
 - * 7월초 기한 품목 : 9.29(화)까지(당초 : 7.3(금))
(추석연휴(9.30~10.4)로 인해 9.29일까지로 조정)
 - * 이식용 미꾸라지 : 10.30(금)까지(당초 : 9.29(화))
(연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10.30일까지로 조정)

□ 당초 수입이행기간 내 이행완료 업체들에 대한 조치

- 제출한 수입실적증빙을 통해 당초 수입이행기간 내 이행완료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금년도 차기* 입찰·배분 시 1월에 낙찰·배분받아 당초 이행기간 내 이행완료한 품명과 동일한 품명에 한해 최대 90일 이내에서 이행기간 연장(단, FTA 협정 상 당해연도 TRQ 물량은 당해연도에만 소진이 가능하고 차기년도로의 이월은 불가하여 최대 12.31(목)까지만 연장 가능하므로 입찰·배분 일정에 따라 품목별 연장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)
 - * 본인의 차기 낙찰 또는 배분의 배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품목의 차기 입찰 또는 배분 시 본인이 낙찰 또는 배정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됨
(참고 표 참조)
- ※ 이식용 미꾸라지의 경우에는 연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10.30일까지로 조정

□ 기타

- 금번 조치는 저율관세할당의 기본 취지와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 및 업계 고충 해소를 위한 제한적·한시적인 조치임
- 품목별 자세한 내용은 뒷장의 표를 참고

참고

품목별 이행기간 연장 사항

FTA	품목	1차 배정		차기 배정			운영방식
		당초 이행기간	이행기간 연장 후	배정 예정 시기	이행기간		
					기본	1차 당초 이행기간 내 이행완료 업체	
한-아세안 FTA	새우,보리새우 (새우살, 기타)	7.3(금)	9.29(화)	7월 초	12.29(화)	12.31(목)	공 매
	새우, 보리새우 (활,신선,냉장)						
	새우,보리새우 (가공)						
한-중 FTA	낙지(냉동)	3.31(화)	6.30(화)	4월 초	6.30(화)	9.29(화)	공 매
	낙지(활,신선,냉장)	7.3(금)	9.29(화)	7월 초	11.30(월)	12.31(목)	
	바지락(활,신선,냉장) -식용						
	미꾸라지(활어) -식용						
	미꾸라지(활어) -이식용	9.29(화)	10.30(금)	4월 초	9.29(화)	10.30(금)	
	아귀(냉동)	7.3(금)	9.29(화)	7월 초	11.30(월)	12.31(목)	
	조미오징어 (절임류-젓갈)						
	바지락(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)	3.31(화)	6.30(화)	4월 초	6.30(화)	9.29(화)	배 분
	바지락(냉동)						
	복어(활어)						
오징어 기타							
한-베 FTA	베트남새우류 (7개 코드)	7.3(금)	9.29(화)	7월 초	12.29(화)	12.31(목)	공 매